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○○○○○○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·이동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재외국민등록 신청,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(현행 제2조제1항제1호, 현행 제7조제1항제1호 삭제)
- 나. 재외국민등록 신청,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(안 제2조제5항, 안 제7조제5항 신설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 조회 중(2025. 5. 22. ~ 6. 2.)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진행 예정(2025. 5. 28. ~ 7. 7.)

3) 행정규제 : 행정규제 미대상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까지의”를 “제5항까지의”로, “제4항 각 호”를 “제4항 및 제5항 각 호”로 한다.

⑤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자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 등록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등록자 본인 신청을 전제로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

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 등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등록의 신청 방법) ① 「재<br>외국민등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<br>한다)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<br>려는 재외국민(이하 “등록대상<br>자”라 한다)은 외교부령으로 정<br>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<br>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<br>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<br>대사관·총영사관·영사관·분<br>관 또는 출장소(이하 “등록공<br>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| 제2조(등록의 신청 방법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<br>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<br>에 따른 기본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·3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·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<br>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~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<br>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<br>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<br>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<br>의3에 따라 등록대상자 본인 신<br>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보<br>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 |



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 
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 
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 
다.

1.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 
변경된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  
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 
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  
서

2. 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

--.

<삭제>

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 
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 
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 
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  
경된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 
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  
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등록자  
본인 신청을 전제로 행정정보의  
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 
받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
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  
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 
한다. 다만 등록자가 확인에 동  
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  
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32) 585 - 3188 |